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1.

발 의 자 : 최은석 · 안철수 · 박수영
성일종 · 강대식 · 고동진
서명옥 · 권영진 · 김기웅
김태규 · 이종배 · 김승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(안 제98조의9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 세대 1주택자로 본다. ③·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